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02

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이용우·전진숙·정혜경

김태선 · 김 윤 · 박용갑

김우영 · 이학영 · 임미애

천하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.

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1항제3호).

법률 제 호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8조제1항제3호 중 "1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8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환경	제58조(등록의 취소 등) ①			
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			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		
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				
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				
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				
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				
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				
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	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	
3. 최근 <u>1년</u> 이내에 두 번의 영	3 <u>3년</u>			
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				
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				
한 경우				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	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